

맥아더의 극동국제군사재판 처리와 전후 한일관계 굴절의 기원*

전쟁에서 완전히 파괴된 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과제였다..... 이 과제가 일본에서 전쟁 재개 능력을 없애고 전범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 되어야 한다.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

이 상 호**

1. 서 론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처리 계획
3. 극동국제군사재판 구성과 맥아더의 역할
4. 망각에서 왜곡으로: 전후 한일관계 굴절의 기원
5. 결 론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27-A00083)

** 군사편찬연구소

1. 서론

인류가 역사라는 학문을 창출한 이후 이를 연구, 발전시키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그 행위의 적실성을 고구(考究)하고 이에 대해 미래의 행위에 대한 준칙을 만들어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사를 통해 이러한 정의를 되새겨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한국은 일본에 의한 35년간의 식민지 지배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받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은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에 대한 질곡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자는 허명에만 집착하고 있다. 철저한 과거 반성 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만을 강조하는 것은 향후 한일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역시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미국의 보호 하에 자국의 주권을 위탁하면서 무임안보승차¹⁾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 이제는 과거 자신들의 침략적 행위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핵투하의 피해 국가로 위장하고 있다. 즉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 아니 외면하다가 망각을 지나 왜곡으로 치달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소위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일본인 학자들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위로라는 가식적 의견 개진으로 이러한 역사의 망각, 더 나아가 역사왜곡까지도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²⁾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적 망각은 어디에서

1) 무임안보승차와 관련해서는 찰머스 존슨의 논의를 참조. 찰머스 존슨 저·장달중 역, 『일본의 기적: 통산성과 발전지향정책의 전개』, 박영사, 1984.

2) 한도 가즈토시·박현미 옮김, 『쇼와사』 1, 2, 루비박스, 2010; 다치바나 다카시·이규원 역, 『천황과 도쿄대』 1, 2, 청어람미디어, 2008.

출발한 것인가. 필자는 이를 미국의 일본 점령 이후 전쟁범죄자 처리에 대한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천황’에 대한 면죄부는 현재 일본 우익의 행동과 발언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관계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전후 일본의 전범 처리에 대해 맥아더기념관 문서³⁾를 통해 당시의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⁴⁾이 어떻게 준비되고 처리되었으며, 이에 대한 맥아더의 역할과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천황’의 전범 기소문제를 둘러싼 미국 워싱턴과 맥아더의 견해와 대응을 분석한다.

맥아더의 도쿄재판처리 이후 1951년 10월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부터 1965년 6월 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포함하여 6개의 조약과 협정이 서명되고, 그해 12월에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한일국교 정상화가 실현되었다.⁵⁾

흔히 한일회담은 1951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맥아더와 직접 관련을

3)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Blue Binder Series 문서철은 맥아더기념관 문서군 가운데 하나인 Record Group 9의 일부문서철이다. RG-9의 공식 명칭은 전문철(Collection of Messages)로 1945년부터 1951년까지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군에는 일본항복에 따른 작전보고서와 일본점령정책 및 주한미군과 맥아더사령부와의 전문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Blue Binder Series는 하드커버로 둘러싸인 진한 청색 바인더로 묶여 있는데 61개의 Binders에 총 9,500여장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전문뿐만 아니라 편지, 비망록 등 맥아더와 그의 부관들이 가장 중요한 문서로 취급한 것을 모아놓았다. 보안등급은 최고기밀부터 기밀해제가 되지 않은 것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필자는 War Crimes(전쟁범죄) 파일을 분석하였다. 이상호, 「미국 맥아더기념관 소장 한국관련 자료조사 및 해제」, 『해외사료총서 13: 미국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 V』, 국사편찬위원회, 2007.

4) 한국 학계에서 도쿄재판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해방 후 도쿄재판 당시에 일부 잡지에서 언급된 이후 1990년대 이후 들어서서야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김일환, 「東京 戰犯者 裁判·12月 8日 眞珠灣 奇襲의 責任追究·東條의 陳述과 木戸內大臣의 日記」, 『신천지』 1947년 신년호(통권 12호, 제2권 제1호); 김일환, 「蘭印侵略과 比島殘虐事件(12月 東京戰犯裁判)」, 『신천지』 1947년 3·4월(통권 14호, 제2권 제3호); 김철우, 『일본전범재판기』 조선정경연구소, 1947; 김일영, 「일본전범재판의 전모」, 『民聲』 제4권 제5호 1948년 5월호; 김호열, 「戰犯夜話」, 『신천지』 1949년 2월(통권 33호, 제4권 제2호); 박원순, 「동경전범재판 그 능욕과 망각의 역사」, 『역사비평』 계간 26호, 1994;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의 전쟁범죄 연구』, 한겨레신문사, 1996.

5)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쪽; 외교통상부, 『한국의외교 60년』, 외교통상부, 2009, 62~63쪽.

것은 역사적 연관관계가 매우 약하다는 주장도 있으나⁶⁾, 전후 한일관계는 맥아더사령부의 주선과 압력에 의해 준비되고 기획되었다.⁷⁾ 물론 맥아더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 한일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⁸⁾이지만, 맥아더가 당시 미국 정계나 동아시아에서 갖는 상징성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한일회담의 타결을 촉진시킨 냉전논리의 첫 번째 힘은 전후 국제체제의 냉전구조와 이와 연계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형태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회담의 개시 단계부터 타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일교섭을 타결시키고자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애당초 한일 양국을 회담의 테이블에 앉힌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었으며 나아가 반복되는 회담의 중단과 결렬사태를 회담재개와 타결로 이끌어가기 위해 배후에서 압력을 가한 것도 미국이라는 것이다.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맥아더의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입장과 여기서 배태된 문제점들이 전후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6) 대부분의 한일회담에 대한 회고록이나 연구서에서는 맥아더와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이 소략하다.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986; 兪鎭午, 『韓日會談 - 第1次 會談을回顧하면서-』,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 1993; 이재오, 『한-일관계사의 인식 I - 한일회담과 그 반대운동』, 학민사, 1984;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3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아문화사, 1995; 이정식, 『韓國과 日本 - 政治的관계의 照明』, 교보문고, 1986.

7) 원래 한일간의 국교정상화 문제는 그 시점이 연합국의 대일평화조약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이다. 원용석, 『한일회담십사년』, 을유문화사, 1965, 227쪽.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1950년 2월 이승만의 대일본 방문시 맥아더와의 회담에서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희,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2008, 19쪽.

8) 五百旗頭眞, 『米國の日本占領政策』, 中央公論社, 1985; 菅 英輝, 『米ソ冷戰とアメリカのアジア政策』(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92); 李鍾元, 『東아시아冷戰と韓米日關係』(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6); Takemae Eiji,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New York: Continuum, 2002).

9)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팀 편,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1996, 228쪽.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처리 계획

태평양전쟁 종결 이후 맥아더는 일본통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푸른 눈의 대군’으로 일컬어지던 맥아더는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통해 일본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했다. 맥아더의 일본점령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맥아더의 초기 점령정책은 군국주의를 일소하고, 일본사회내부에 민주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 맥아더의 가장 최측근 가운데 하나인 휘트니(Courtney Whitney)는 맥아더의 점령정책을 다음과 같이 15가지로 정리했다. “군사력의 파괴, 전쟁범죄인들의 처벌, 대의제정부 구조의 수립, 헌법의 근대화, 자유선거 실시, 여성참정권 확립, 정치범의 석방, 농지개혁, 자유 노동운동의 성립, 자유 경제 수립, 경찰억압체제의 폐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의 육성, 교육의 자유화, 정치권력의 분산화, 정교분리”등이다.¹¹⁾

휘트니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 것이므로 상론하지는 않겠지만, 초기 대일점령정책이 앞에서 제기한 방향으로 진전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냉전이 시작되며 일본이 공산주의의 상징적 방어 지역으로 전환된 1947년 이후 이러한 개혁 정책도 보수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945년 8월 11일 미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은 동맹국들의

10) 맥아더의 일본점령정책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竹前榮治, 『GHQ』, 岩波書店, 1983; 竹前榮治 解説・今泉眞理 譯, 『GHQ日本占領史 1: GHQ日本占領史序説』, 日本圖書センター, 1996;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9) [존 다우어 · 최은석 옮김,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2009]; Takemae Eiji,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New York: Continuum, 2002); 이혜숙, 「일본현대사의 이해-전후 일본사회와 미국의 점령정책-」, 『해외지역연구』, vol. 8, 경상대학교 해외지역연구센터, 2003.

11) D. Clayton James, *The Years of MacArthur: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5), pp.9~10.

동의를 얻어 아시아 연합국 군대내의 최고 선임자인 맥아더를 연합국최고 사령관(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에 지명했고 그는 8월 15일 사령관직에 임명됐다.¹²⁾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내용의 종전방송을 내보냈다. 《매일신보》 8월 16일자에는 미 대통령 트루먼이 보낸 일본군의 전투정지에 관한 통고가 보도되었다.¹³⁾

8월 15일 맥아더는 작전명령 제4호(Operations Instructions Number 4)를 발표했다. 이 작전명령에는 미태평양육군사령부가 미태평양함대와 함께 합동으로 일본정부와大本營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항복에 따라 일본과 38도선 이남의 한반도를 점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과 한국점령을 위한 미태평양육군 휘하의 부대는 크루거(Walter Krueger)가 지휘하는 미 제6군, 아이켈버거(Robert L. Eichelberger)가 지휘하는 미 제8군, 스틸웰이 지휘하는 미 제10군, 하지스(Courtney B. Hodges)가 지휘하는 미 제1군 그리고 하지 중장이 지휘하는 24군단과 키니(George C. Kenney)가 이끄는 극동공군, 리차드슨(Robert C. Richardson)이 이끄는 중부태평양미육군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 점령은 하지가 이끄는 미 제24군단이였다. 24군단은 7, 96, 40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부대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다.¹⁴⁾

8월 19일, 아직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던 맥아더 원수에게 일본 육군 참모차장 가와베 도라시로(河辺虎四郎) 중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사절이 파견되었다. 일행은 태풍이 접근하는 가운데 비행기로 오키나와의 이에지마(伊江島)를 경유하여 마닐라로 날아가, 맥아더로부터 세 개의 문서를 받아들고 21일 도쿄로 돌아왔다. 세 개의 문서란 종전 때 발표되어야 할 조서인 '천황'의 포고문, 항복문서 그리고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1)였다.¹⁵⁾

12) 《New York Times》 1945년 8월 12일: William Manchester, *American Caesar* (New York: Laurel, 1978), p.514.

13) 《매일신보》 1945년 8월 16일.

14) "Operations Instructions: Number 4" (1945. 8. 15), 신복룡 편, 『한국분단사 자료집』 Ⅲ-3, 원주문화사, 1992, 325~340쪽.

15) 고모리 요이치 지음·송태욱 옮김,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하였다』, 뿌리와이파리, 2004, 90~91쪽.

맥아더는 필리핀 마닐라의 태평양사령부로부터 그의 전용기 바탄호를 타고 1945년 8월 30일 오후 2시 일본의 아쓰기(厚木) 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후 맥아더의 제1성은 '멜버른으로부터 도쿄까지의 길은 멀었다'라는 한마디였다.¹⁶⁾

이때 맥아더가 함께 이끌고 온 연합국 군대는 병력 7,500명에 380척에 달하는 함대였다.¹⁷⁾ 9월 2일 일본과의 항복협정조인식이 요코하마 앞 바다의 미주리 함상에서 연합국 대표들과 일본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연합국을 대표하여 맥아더, 미국대표 니미츠(Chester W. Nimitz), 소련대표 데레비얀코(K. N. Derevyanko) 중장, 중국 대표 슈용창(徐永昌) 군사부장 등 13개국 대표단과 일본 측에서는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 외상 등이 참석하였다. 이 날의 조인식으로 인해 태평양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¹⁸⁾

항복문서는 1945년 7월 26일 발표된 포츠담 선언의 기초 하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 항복문서는 크게 2가지로 대표되는데 하나는 어떠한 위치에 소재함을 불문하고 모든 일본국 군대는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 항복할 것을 명령하였고, 다른 하나는 정부관리 및 육해군 직원에 대해서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이 그 임무를 해제하지 않는 한 각자의 지위에 머무르며 그 직무를 계속해서 행한다는 명령이었다.¹⁹⁾

일본 점령이 진행되는 동안 미군과 일본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초기 최고사령관의 지위는 일본수상이나 '천황'보다도 상위로써 살아 있는 신으로 간주되었고, '푸른 눈의 대군' 혹은 '일본의 구원자'로서 상징되었다.²⁰⁾

일본 점령의 개시와 함께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던 일본에 대한 전쟁범죄

16) Chief of Military History, *Reports of MacArthur-MacArthur in Japan: The Occupation: Military Phase, vol. I, Supplement* (Washington D. 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4), p. 29.

17) 《매일신보》 1945년 8월 30일.

18) Takemae Eiji, *op. cit.*, p. 57.

19) 《매일신보》 1945년 9월 2일.

20) Takemae Eiji, *op. cit.*, pp. 4~5.

재판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 전범재판의 필요성이 연합국 사이에 대두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였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은 후에 초대 연합국전범위원회(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²¹⁾ 위원장이 된 호주인 라이트(Lord Wright) 경에 의해서였다. 1943년 10월 런던에서 설립된 연합국전범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중국, 호주, 미국,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여 17개국으로 구성되었다.²²⁾ 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은 1943년 10월 모스크바 선언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가해자들이 그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과 또한 범행이 특별한 지역적 연고를 가지지 않은 주요 전범들의 경우에는 연합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규정되었다. 도쿄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이 후자의 결정에 의해 구상된 것이다.²³⁾ 그 후 1945년 초 연합국전범위원회는 전쟁범죄에 대한 성격을 명문화했다.

1944년 7월 15일 연합국전범위원회는 위원회 지령 19호로 일본의 전쟁범죄 개시시기를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으로 삼았다. 1945년 7월 27일 유엔전범위원회의 극동 및 아시아 소위원회(Far Eastern and Pacific Subcommission)는 장교를 포함하여 100명의 일본군을 전범 명단으로 기재했다. 한편 중국인민정치회의에서는 7월 17일 '천황' 히로히토(裕仁)를 전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당시 중국을 포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소련, 네덜란드 등은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프랑스는 유보적 입장에 있었고, 영국은 이에 대한 결정이 트루먼에

21) 국제연합은 1944년 10월 덤바턴오크스(Dumbarton Oaks)회의에서 설립에 관한 제안이 발표되었고,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 국제연합회의에서 국제연합헌장을 공식 채택했다. 따라서 1945년 4월 25일 이전에는 United Nations를 연합국으로 그 이후에는 유엔으로 명명한다.

22) Arnold C. Brackman, *The Other Nurenberg: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s Trial* (London: Collins, 1990).

23) 박원순,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근현대사강좌』 통권 제17호, 근현대사연구회, 1995, 80쪽.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²⁴⁾

1945년 6월부터 런던에서 미·영·프·소의 4대국에 의한 협의가 시작되어 마침내 8월 8일 연합국 4개국은 런던 협정, 즉 '유럽 추축국의 중요 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²⁵⁾ 제6조에는 국제군사재판소가 관할하는 범죄로서 A항에 침략전쟁의 계획, 준비, 수행 등의 평화에 대한 죄, B항에 통상의 전쟁범죄, 즉 전쟁 법규 또는 관례의 위반, C항에 인도(人道)에 대한 죄 등이 정해졌다. A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겁고 혹은 가장 중요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ABC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²⁶⁾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이었다. 여기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우리는 일본인을 민족으로써 노예화하거나, 멸망하게 할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모든 전쟁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²⁷⁾

독일 패배 후 일본의 항복을 둘러싸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두 갈래로 분열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천황제를 제거하고 식민지를 박탈하여 일본의 평화국가화와 탈군사화를 진행시키려는 이른바 대일 강경 평화주의자이다. 그들은 일본의 국가체제 그 자체의 변혁을 주장하고 그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무조건 항복을 관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천황제를 온존시켜 식민지의 보유를 가능한 한 허용하고 戰前체제로부터 군부를 제거하는 것에 의하여 일본 내의 자유주의자와의 협동을 도모하여 그들이 주도할 입헌군주제 하의 일본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한 일본을 부활시켜 소련 팽창주의의 방패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전자의 흐름은 자본주의체제의 실정의 변혁을 주장하는 변혁파, 즉,

24) 에드워드 베르 저·유경찬 역, 『히로히토-신화의 뒤편』, 서울: 을유문화사, 2002, 460쪽.

25) 허버트 빅스 지음·오현숙 옮김, 『히로히토 평전, 근대 일본의 형성』, 삼인, 2010, 643쪽.

26) 하야시 히로우미 지음·현대일본사회연구회 옮김,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논형, 2012, 31~32쪽.

27)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68, 4~5쪽.

뉴딜파로 통했다. 반면에 후자의 흐름은 그 뉴딜적 사회변혁의 정책에 대항하여 자본과 개인의 자유로운 발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적 탈 뉴딜파와 결합되었다.²⁸⁾

따라서 보수파적 반 뉴딜파인 당시 미 국무차관이던 그루(Joseph C. Grew)는 '천황'의 전범기소에 대해 반대했다. 그루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1945년 8월 7일의 전문에 의하면 그는 '천황'이 전범으로서의 증거가 부족하고, 그가 군사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일 그를 전범으로 기소한다면 일본 국민 전체가 단합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⁹⁾ 당시 맥아더와 그루사이에 어떠한 의견이 전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후 맥아더의 행동과 주장은 그루의 입장과 유사했다.

3. 극동국제군사재판 구성과 맥아더의 역할

1945년 8월 16일 일본인 전범을 조사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대표단으로 유엔전범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8월 29일 미국의 삼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앞두고 히로히토에 대해 있을 지도 모를 재판에 대비하여 맥아더에게 그에 대한 단서들을 은밀히 수집할 것을 지시했다.³⁰⁾

28) 신도 에이이찌 저·송이랑 역, 『다시보는 일본 전후외교』,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5, 173~174쪽.

29) "The Under Secretary of State(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1945. 8. 7),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 VI : The British Commonwealth & The Far East, Washington, U. S. G. P. O, 1969, pp. 905~906(이하 FRUS).

30) Yuma Totani, *The Tokyo War Crimes Trial-The Pursuit of Justice in the Wake of World War II*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p. 53.

유엔전범위원회 미국 측 위원인 호지슨(Hodgson)이 1945년 9월 1일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전문에 따르면 유엔전범위원회가 작성한 일본의 전쟁 범죄와 적대행위에 관한 요약제안서가 첨부되어 있다. 1945년 9월 12일 삼부조정위원회는 이 전문을 토대로 극동에서의 전범처벌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SWNCC 57/3으로 입안했다. 이 문서의 부속문서 D는 전쟁범죄 혐의자에 확인·체포·재판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지령문이다. 이 문서에서 합참은 '천황'의 경우 특별 지시가 고려중에 있으므로 전범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³¹⁾

일본에 대한 항복조인식이 거행된 지 10일이 지난 1945년 9월 12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에게 일본인 전쟁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군사법정이나 재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유럽에서 적용될 절차에 따라 포괄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알려왔다.³²⁾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위해 미국 전범국(United States War Crimes Office)에서 3명의 직원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전했다.³³⁾ 한편 동 문서에는 주요 일본인 전범 명단이 제시되었는데, 총 44명으로 이 명단에는 처음부터 히로히토 '천황'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³⁴⁾

아베 노부유키, 호시노 나오키, 이타가키 세이시로, 가노코기 가즈노부, 고바 야시 세이조, 고이소 구니아키, 쿠즈오 요시히사, 마츠오카 요스케, 마츠이 이와네, 마자키 진자부로, 미나미 지로, 무토 아키라, 나가노 오사미, 나카지마 키쿠헤이, 아이카와 요시스케, 아나미 고레치카, 안도 기사부로, 아라키 사다오, 아리타 하치로, 도이하라 겐지, 고토 후미오, 하시모토 강코로, 하타

31) "Report by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1945. 9. 12), *FRUS*, 1945, 1971). pp. 926~936.

32) "JCS to MacArthur(1945. 9. 12)",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33) 미국전범국에서 파견한 직원은 고프(Abe McGregor Goff)대령, 사케트(Benjamin E. Sackett)중령, 트로메인(Bertram W. Tromayne)대위 등 3명이었다. "War to CINCAFAC(1945. 9. 15)",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34) 이 전문에 나타난 주요 일본인 전범 명단은 다음과 같고 그 이름은 알파벳으로 기재되어 있다. "War to CINCAFAC(1945. 9. 15)",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순로쿠, 혼조 시게루, 니시오 도시조, 신도 카즈마, 시오텐 노부다가, 히라토리 도시오, 스기야마 모토, 타다 하야오, 다카하시 사네히치, 다니 마사유키, 데 라우치 히사이치, 야마다 오토조, 우에다 겐이치 등 44명이다.

1945년 9월 22일 전쟁부는 맥아더에게 전범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전쟁범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17개조 조항으로 구성된 전문은 맥아더에게 부여된 권한 및 임무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도 마지막 17조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천황' 히로히토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³⁵⁾

17조: '천황'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하는 어떠한 행동도 특별한 지시 없이는 행하지 말 것.

일본 '천황'에 대한 기소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미국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왕 측근과 인척을 일본인 전범 명단에 추가로 포함시켰다.³⁶⁾ 여기에는 패전 당시 수상이던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왕자, 후미마로 고노에 왕자 등이 포함되었다.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왕자(수상), 히라누마 기이치로 남작(추밀원 의장), 히로타 고기(전 수상이자 외무성 장관), 이케다 세이헌(추밀원 의원), 후미마로 고노에 왕자(전 수상이자 현 무임소장관), 쿠루사 사부로(전 미국 특명전권공사), 나시모토 모리마사 왕자(육군 원수, 대본영 의원), 노무라 기치사부로 제독(전 주미대사), 도고 시게노리(전 외무성장관)

한편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맥아더사령부는 관계 연합국들

35) "War to CINAFPAC(1945. 9. 22)",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36) 이 명단은 국무부의 도움으로 미국전쟁범죄국(U. S. War Crimes Office)이 준비하였다. "Washington to CINAFPAC ADV(1945. 9. 22)",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재판소에 보낼 적절한 인물을 파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보고서를 전달해 주도록 전쟁부에 요청했다.³⁷⁾

또한 맥아더사령부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다루게 될 일본 전쟁범죄자의 이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³⁸⁾ 이는 전범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히로히토 일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부에서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구성문제에 대해 맥아더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먼저 재판소의 구성은 당시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객슨법원과 같은 유형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였다.³⁹⁾ 또한 1945년 9월 21일 맥아더가 요청한 관계 연합국들에 대한 재판소 구성 인물 추천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중심이 되어 중국, 소련, 영국(가능하다면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으로부터 적당한 인물을 추천받을 것이고, 이들 가운데 적절한 인물을 연합국최고사령관(맥아더)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⁴⁰⁾

그렇다면 일본 전쟁범죄자 명단에서 일왕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들 수 있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이 맥아더의 부관 펠러즈(Bonner F. Fellers)의 보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⁴¹⁾

1945년 10월 2일 일반참모부 준장 펠러즈는 맥아더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천황' 히로히토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그는 일본인에게 스스로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37) "CINCAFPAC ADV to WARCOS(1945. 9. 21)",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38) "CINCAFPAC ADV to SERVTAG(1945. 9. 23)",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39) "Assistant Secretary of War to MacArthur(1945. 9. 27)",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40) "Washington to CINCAFPAC ADV(1945. 10. 1)",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41) 존 다우어 · 최은석 옮김, 앞의 책, 383쪽.

‘천황’을 상징적인 국가수반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조기종전은 ‘천황’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그의 명령에 따라 7백만 명의 일본군이 무기를 버렸고 이로 인해 미국이 무혈입성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즉 그의 행동으로 인해 수십만의 미군사상자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천황’을 이용한 후에 전범으로 재판한다면 이는 일본인에게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만일 ‘천황’이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전반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일본 국내의 혼란과 유혈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공무원과 대규모 원정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⁴²⁾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설립안이 최종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언론 공개가 문제가 되었다. 워싱턴 당국은 맥아더에게 극동국제군사재판 구성에 관한 정책 설명을 도쿄의 맥아더사령부에서 발표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타진했다.⁴³⁾ 하지만 이에 대해 맥아더는 전범관련 명령을 공포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둘러대며 자신보다 더 고위급 인사(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장관)가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⁴⁴⁾

일본에 모든 점령부대의 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명령의 발표는 군정에 부담이 될지 모르는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즉 명령발표의 충격에 대해 일본정부가 존속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잔학행위에 대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본관은 일본에서 진행절차를 주도하기 위해 도조 수상에

42) 존 다우어 · 최은석 옮김, 위의 책, 383쪽. 펠러즈는 전임 제독 요나이에게, 천황이야말로 점령군의 “최고의 통치자”이며, “점령이 지속되는 한 천황제도 지속” 될 것이라 말하면서, 소련이 주도하는 ‘전 세계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천황제 유지가 긴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존 다우어 · 최은석 옮김, 위의 책, 416쪽.

43) “Washington to CINAFPAC ADV(1945. 10. 7)”,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44) “CINAFPAC ADV to WARCOS(1945. 10. 7)”,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대한 재판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받기를 제안한다. 어떠한 외국관리도 아직 지명되고 있지 않다. 절차가 완전히 준비되고 이러한 재판이 수행될 준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만일 그 법령이 발표된다면 커다란 불리함을 가져올 것이다. 기본적 원칙은 이미 항복문서에 포함되어 대중들에게 공표되었다. 만일 공표가 결정되었다면, 본관은 완전한 문구보다는 좀 더 일반적 용어로 발표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대해 워싱턴 당국은 더 신중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감의 전쟁범죄국 부국장인 고프(A. M. Goff)를 다시 파견할 것임을 알려왔다.

도조수상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맥클로이가 10월 20일 경 귀하 사령부에 도착할 것임. 만일 긴급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범과 관련한 다른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기다려야 함. 법무감의 전쟁범죄국 부국장인 고프 대령이 오늘 정도에 귀 사령부에 도착할 것임. 그가 맥클로이의 도착 전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것임.

또한 국무부는 중국, 영국, 소련에 각각 5명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에 각각 3명의 국제군사법원의 구성원에 적합하고 영어 능력이 뛰어난 장교 내지 민간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다.⁴⁵⁾ 워싱턴 당국의 파견으로 도쿄에 온 전쟁부 차관 맥클로이(John J. McCloy)는 맥아더와 국제군사재판소 검사단을 이끌 인물에 대해 논의했다.⁴⁶⁾ 물론 이는 후에 검사국을 이끈 키난(Joseph B. Keenan)⁴⁷⁾이었다.

45) "Washington to GHQ Tokyo(1945. 10. 25)",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46) "CINCPAC ADV to WARCOS(1945. 10. 25)",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47) 키난은 1888년 1월 11일 로드아일랜드 포트켓(Pawtucket) 태생으로 1910년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고 1913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 클리블랜드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였다. 이후 워싱턴으로 진출,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법무부에 근무하며 미국 법무감 보좌역을 역임, 이후 법무부감을 역임했다. 1차 대전 때에는 임국 원정군 제137야전포병대에서 근무하고 후에 법무국에 근무하였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검사단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는 워싱턴에서 개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맥아더는 맥클로이와 논의 후 미국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감행한 일본군부와 그 내각에 대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⁴⁸⁾ 맥아더의 주장에 따르면 “진주만공격의 권한을 가졌던 도조와 그의 내각에 대한 재판”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맥아더는 “그들은 전쟁선포를 하기 전에 일본군의 교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미국을 공격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 평화로운 국가의 국민이 살해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맥아더는 히로히토 일왕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당시 전시내각인 도조 히데키와 내각구성원들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결국 전쟁부장관은 맥아더에게 키난을 맥아더사령부의 참모로 승인하고,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처리할 대상 인원을 선발함에 있어, 전쟁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부기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범죄는 전쟁을 계획, 준비, 도발, 주도했거나,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전쟁에 공동모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⁴⁹⁾

1945년 11월 24일 추가로 주요 일본인 전범 명단이 추가되었다.⁵⁰⁾ 타니 시자오, 하타 로쿠진, 혼조 시게루, 와치 타카지, 하시모토 경코로, 도이하라 겐지, 기타 세이치, 이타카기 세이시로, 이소가야 렌슈케, 카게사 사다키, 도조 아이키, 사카이 타카시 등이 그들이다. 이 때 발표된 인물 12명은 주로 중국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들로서 중국외교부의 주요 전범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11월 30일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에게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체포, 재판, 처벌하는 것에 대해 그를 면제시킬 수는 없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⁵¹⁾

48) “CINCFAPAC ADV to WARCOS(1945. 10. 31)”,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49) “Washington(Secretary of War) to CINCFAPAC ADV(MacArthur)(1945. 11. 2)”,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50) “Washington to CINCFAPAC ADV(1945. 11. 24, WX 84778)”,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51) “Washington(JCS) to CINCFAPAC ADV(1945. 11. 30)”, MA, RG 9, Blue Binder

히로히토가 전범으로 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 미국정부는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체포, 재판, 처벌하는 것에 대해 면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천황'으로서 히로히토 없이도 점령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의 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제안이 타당하다면 우방국 대부분이 요청할 것이다. 여러 사실을 검토한 후, 히로히토에 대한 재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들을 이른 시기에 수집해야 한다. 증거의 수집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다음과 같은 3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첫째, 침략전쟁, 둘째, 집단살해를 포함한 전쟁법규와 전쟁관습법의 위반, 포로 및 민간인에 대한 가혹한 대우, 불필요한 파괴행위, 셋째, 전쟁전후에 민간인에 대한 추방, 노예화, 절멸, 집단살해와 종교·인종·정치적 이유로 박해하거나 국내법의 위반을 무시하고 구금하는 행위 등이다. 즉 전쟁범죄의 기준에 의하면 '천황' 히로히토는 전범대상자로 분류할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무부의 애치슨(Dean Acheson)은 일본 '천황'이 미군의 점령에 유익하다는 점을 지적했다.⁵²⁾

민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천황이 머지않은 장래에 사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전범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고, 또 일본인들이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믿는 지도자를 배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를 계속해서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히로히토에게 천황직을 사직하지 말라는 암시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 '천황'에 대한 기소면제 의견이 내부적으로 조율되어 가는 가운데 맥아더와 미 합동참모본부는 재판소 구성과 운영절차를 논의하면서, 다투는 재판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Series, War Crimes.

52) "Washington(SD) to SCAP(1946. 1. 8)",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먼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키난을 일본의 전범에 대한 기소준비를 위해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 명령에서 미국의 행정부의 부서와 인원이 최대한 키난을 돕도록 지시하였다.⁵³⁾ 이러한 행정명령을 받은 키난은 12월 3일 40명 내외의 변호사와 참모진을 대동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쿄로 출발했다.⁵⁴⁾

재판소 운영과 설치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다른 국가로부터 제기된 문제제기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⁵⁵⁾ 각국 정부가 제기한 문제는 4가지였다. 1) 국제재판소는 몇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가? 2) 판사의 직위와 계급은? 3) 재판소의 관할과 규칙은 무엇인가? 4) 검사국의 구성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 국무부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리하였다. 첫째 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원에 대해서는 “재판소는 항복문서에 서명한 각국을 대표하는 9명을 넘지 않는다. 각 정부는 1명의 판사와 1명의 교대판사를 둘 수 있다. 만일 어떤 정부가 판사를 지명하는데 실패한다면 판사의 총수는 줄어 들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연합국 전승국에 1명의 판사를 배정한다는 원칙이었다. 둘째, 판사의 직위와 계급은 중장이나 그에 준하는 계급으로 정하였다. 셋째, 재판소의 관할과 규칙에 대해서는 “재판소의 관할은 전쟁 범죄에 한정한다. 특정범주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검사부가 지명한다. 그리고 재판절차는 뉘른베르크에 준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국의 구성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는 필리핀과 인도를 포함하여 검사국에 1명의 검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답변을 정리한 국무부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재판 개시일을 1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워싱턴의 조율에 대해 연합국최고사령부는

53) “Executive Order No. 9660(1945. 11. 29)”,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54) “Washington to MacArthur(1945. 11. 18)”,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55) “Washington(JCS) to CINCFAPAC ADV(MacArthur)(1945. 12. 20)”,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다음과 같이 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⁵⁶⁾

1. 재판소는 최하 3명에서 최대 5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함.
2. 재판소의 소장은 특별히 SCAP에 의해 지명될 것임. 재판관은 중장급 및 그 이상으로.
3. 재판소와 진행절차는 SCAP에 의해 수립될 것임. 극동지역의 상황에 적당한 부분에 한해서는 다투베르크를 준용할 것임.
4. 재판은 2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고, 재판관 지명을 위한 각국정부에 대한 요구는 1946년 1월 5일 이전에 이루어 질 것임.

그러나 재판소 구성원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검사단 구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된 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의 키난은 다음과 같이 최종수정안을 제시했다.⁵⁷⁾

1. a. 국제군사재판소는 항복선언서에 서명한 9개국을 포함 가능한 한 많은 수로 구성함. 따라서 대체판사는 필요하지 않음. 국제군사재판소장은 SCAP에 의해 지명됨.
b. 판사의 계급은 미국의 중장급으로 함.
c. 재판소의 관할권은 A급 전범으로 함. (전쟁범죄에 포함하는 행위 적시)
d. 검사단은 이미 국제검사국으로 지명되었고, 주요 보조원들은 필리핀과 인도를 포함한 참가국에 의해 제출된 명단에서 SCAP에 의해 임명될 것이다.
2. a. 국무부는 9명의 배석판사를 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판사의 임명은 불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다수결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b. 판사는 중장급으로 한다.

56) "CINCAFPAC ADV to WARCOS(JCS)(1945. 12. 20)",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57) "Memorandum for the Commander in Chief(1945. 12. 22)",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 c. 국제재판소의 관할은 이미 이전의 지령에 의해 A급 전범으로 한정된다. 대부분의 재판소 규칙은 뉘른베르크의 재판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SCAP은 이에 대한 적용을 극동지역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과 일본지역은 항복의 시기와 점령에 있어 다른 조건이고, 일본인들과 유럽인들의 심리가 다르며 증거부족과 기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3. 기소는 1946년 2월 1일 정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1946년 1월 22일 호주정부가 주요전범 62명을 선정해 미국에 통보했다. 호주가 제출한 주요 전범 명단에서도 그 가운데 7번째로 히로히토 '천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펠러즈 준장의 건의와 애치슨의 주장을 맥아더가 받아들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맥아더는 1월 24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보낸 전문에 히로히토에 대한 전범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⁵⁸⁾

히로히토에 대한 전범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구체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전쟁 막바지에 히로히토는 단순한 자문 이상은 아니었다. 만일 히로히토를 기소할 시에는 점령 계획과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기소는 일본국민들 사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일본인들의 상징이다. 따라서 복수라는 항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세기가 지나도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수십만 명의 지원병이 추가로 요구된다. 따라서 히로히토에 대한 사면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본관은 생각한다.

맥아더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연합국 중 특히 소련과 영국이 '천황'을 전범자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전범자 리스트에는 '천황'이 첫머리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맥아더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58) "CINCPAC ADV(MacArthur) to WARCOS(1946. 1. 24)",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초래할 것인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즉, 만일 미국이 영국의 입장으로 기울어져 '천황'을 재판에 회부한다면 주일미군은 장차 1백만 명의 군사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천황'이 기소되어 교수형에 처해진다면 일본 전역에 군정을 실시해야 하고, 게릴라전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특히 맥아더는 일본 '천황'은 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고, 단지 군국주의적 관료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⁵⁹⁾

히로히토는 전쟁을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던 완벽한 꼭두각시에 불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소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은 일이다. 그는 주변의 권유에 따랐을 뿐 스스로 결정할 입장이 아니었다. 전쟁의 시작도 내각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종전도 내각이 결정했다.

한편 '천황'의 기소를 둘러싸고 미 군부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중국, 영국, 소련에 각각 5명을, 그리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에 각각 3명의 국제군사법원의 구성원에 적합한 장교 내지는 민간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소 구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1946년 1월 19일 맥아더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명령'을 발표한 직후, 극동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ar East: IMTFE)이 미국·중국·영국·소련·호주·캐나다·프랑스·네덜란드·뉴질랜드·인도·필리핀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46년 2월 8일 미국의 위넛트(John G. Winant) 주영미국대사와 애틀리(Attlee) 외무장관 사이의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은 전쟁범죄자로 히로히토의 기소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⁶⁰⁾ 따라서 히로히토의 전범재판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호주의 주장 역시 영국의 조정으로 취소될

59) 에드워드 베르 저·유경찬 역, 앞의 책, 484쪽.

60) "Washington(JCS) to CINCAFPAC(1946. 2. 8)",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것이라고 합의했다. 일본의 점령 책임을 맡고 있던 미국과 영국이 점령부담을 빌미로 '천황'에 대한 전범재판 회부를 전격 취소한 것이다. 중일전쟁부터 시작해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15년 동안 아시아 각국인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다 준 장본인인 히로히토의 이름은 전범 기소장에 오르지 않았다.⁶¹⁾

한편 1946년 4월 25일 합동참모본부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지령의 최종안을 맥아더에게 하달했다.⁶²⁾ 이 문서는 국무부가 1946년 4월 3일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ttee, FEC)에 제출한 문서이기도 했다. 이 문서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지령을 좀 더 가다듬은 최종안으로 1945년 9월 22일의 문서와 거의 대동소이하나 협의 절차에 있어, 기존 문서가 4대 강국의 협의를 존중하였던 데 반해 이 문서는 맥아더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맥아더에게 부여된 모든 전범에 대한 구금권한에서 히로히토는 배제하라는 명령을 특별히 강조했다.⁶³⁾

1946년 4월 28일 국제검사단은 A급 전범자 28명에 대한 기소장 제출을 시작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본안심리가 5월 3일 개시되었다. 재판은 2년 반 동안 지리한 심리와 반론 그리고 재반론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국제검사단은 일본의 범죄에 대해 공소사실로서 55개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 제출했다.

검사단과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공방 끝에 1948년 11월 12일 최종판결이

61) 일본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호사카 마사야스(保阪正康)에 따르면 키난과 미국의 최대관심사가 천황을 면책하여 새롭게 상징이라는 지위에 두고 그것을 이용하여 일본통치를 용이하게 한다는 국무부 내 지일파(知日派) 그룹의 의향을 현실화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사카 마사야스 저·정선태 역, 『도조 히데키와 천황의 시대』,페이퍼로드, 2012, 634쪽.

62) "Washington(JCS) to SCAP(MacArthur)(1946. 4. 25)", MA, RG 9, Blue Binder Series, War Crimes.

63) 최근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일왕 히로히토가 전쟁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퇴위)에 대해 이를 저지한 것은 맥아더를 중심으로 한 미국 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히로히토가 전쟁 책임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점령기에는 그 의사가 있었음에도 미국에 의해 저지되어 정치체로서의 자립성을 빼앗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 평가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메미야 쇼이치 지음·유지아 옮김,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 7 : 점령과 개혁』, 어문학사, 2012, 65~66쪽.

내려졌다. 이 판결문은 전체 55개의 공소혐의에 대해 10개의 공소사실만을 인정했다. 특히 이 10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8개는 평화에 대한 죄를 적용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다. 결국 1948년 12월 23일 A급 전범 가운데 도조 히데키, 히로타 고키를 포함한 7명만이 교수형이라는 죄목으로 단죄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A급 전범은 12월 24일 스가모(巢鴨) 감옥에서 석방됨으로써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폐정했다.

4. 망각에서 왜곡으로: 전후 한일관계 굴절의 기원

극동국제군사재판은 A급 전범을 위주로 이루어진 국제전범재판이었다. 그러나 이 재판이 정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쟁범죄자들의 죄상을 철저하게 심판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쟁개시에서 발발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당시 일본의 최고 통수권자인 '천황'에 대한 면소(免訴)로 인해 오히려 인류의 발전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한 것이었다.⁶⁴⁾

처벌받아야 할 인물은 면소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처벌대상에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A급 전범은 도쿄재판에서 처리되었던 반면, B·C급 전범은 연합국 피해 당사국이 행사했다. 이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조선인이 그 대상이 되고 있었다. 태평양전쟁기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모집된 조선인 청년은 3,000여 명이었고 그 가운데 129명이 전범이 되었다. 이 가운데 23명이 교수형이나 총살형에 처해졌다.

조선인에 대한 연합국의 처리 방안 가운데에서는 1945년 12월 11일과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지구 검사총장과 영국 당국과의 회담에서 '전쟁범죄에 관한 한,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취급한다'고 규정

64) 극동국제군사재판 판사였던 프랑스의 베르나르 판사는 일왕 히로히토 대신 다른 공범자가 처벌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비판했다. 박원순,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근현대사강좌』 통권 제17호, 116쪽.

되었다.⁶⁵⁾ 우쓰미 아이코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인 감시원에게 처음부터 포로 학대의 책임 추궁에 대한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떠맡길 요량으로 '포로를 학대하는 것은 조선인 부대로 일본인이 아니다'는 해외방송을 했다고 밝혔다.⁶⁶⁾

이러한 역사적 아이러니를 도외시한 채, 일본은 현재 보수우익을 중심으로 도쿄재판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지적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첫째, 도쿄재판에 대한 법률 적용 자체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상으로 위법하다는 논리와, 둘째, 연합국에 의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러한 비판을 하려면 일본의 전쟁개시에 대한 불법성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즉 일본 스스로 전쟁법을 어겨가며, 기습공격으로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도쿄재판에 대한 불법성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현재는 일본의 외교적 저자세가 이러한 '도쿄재판사관'⁶⁷⁾에 의해서 강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쿄재판사관이란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승자의 입장에서 세워진 부당한 역사해석으로서 전쟁 중 일본 국가가 한 행동을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일본인의 자존심을 상실시키는 역사관"으로 정의하고 있다.⁶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 일본은 이 조약의 약속을 이행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박원순에 따르면 이 평화조약에는 단순히 도쿄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측면을 넘어 전범의 수색, 체포, 기소, 처벌을 계속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5) 우쓰미 아이코 지음·이호경 옮김,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 동아시야, 2007, 187쪽.

66) 위의 책, 234쪽.

67) 이러한 논리가 자학사관으로 발전하여 일본의 전면적 과거 부정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藤岡信勝, 『自虐史觀の病理』, 文藝春秋, 2000.

68) 박원순, 「동경전범재판, 그 능욕과 망각의 역사」, 『역사비평』 제간 26호, 1994, 242쪽.

하지만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과 함께 이러한 의무 자체를 방기하고 말았다. 먼저 평화조약 체결 대상국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한국 배제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의 부흥과 성장을 고려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라는 분석도 있다.⁶⁹⁾

결국 도쿄재판은 2,000만 명에 가까운 아시아인과 6만 명이 넘는 연합국 사람들의 희생⁷⁰⁾을 뒤로 하고 전쟁의 계획과 수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히로히토에 대한 처벌을 유보함으로써 전후 한일관계 및 일본의 대아시아 전략에도 많은 오류를 가져오게 되었다. 도쿄 재판이 일본의 식민 지배와 관련한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실패했으며, 이후 피해 당사국인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식부족'(Absence of Asia)의 원인이 되었다.⁷¹⁾

특히 일본의 대한 인식에 있어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자의 지적처럼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에 지배당한 나머지 왜곡된 형태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⁷²⁾

도쿄재판을 둘러싼 문제점을 국내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지적했다. 하나는 아시아 피해 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도쿄재판에서는 조직범죄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이나 재벌 보다는 개인의 형사책임에 집중되었고, 마지막으로 도쿄재판을 사실상 주도한 미국이 일본이 만주침략을 개시한 이후 저지른 전쟁범죄만을 재판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도쿄재판의 대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생겨난 피해이지,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⁷³⁾

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전범에 대한 분류, 체포, 기소에 대해 배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냉전이 가

69) 이원덕, 앞의 책, 35~38쪽.

70) 허버트 빅·오현숙 옮김, 『히로히토 평전, 근대일본의 형성』, 삼인, 2010, 24쪽.

71) 도쿄재판의 결과에 따른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Yuma Totani, *Op. cit.*, pp. 255~256.

72) 이원덕, 앞의 책, 304쪽.

73) 송충기,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경 재판의 비교」, 역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역사학 국제회의, 2002, 8.

시화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정의에 대한 실현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국가 이익으로 대체되었고, 결국 일본의 전범은 미국의 보호아래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현재 과거를 망각하며,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허버트 허쉬(Herbert Hirsh)는 학살을 저지른 국가가 현재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 격리시키며, 공식 역사해석을 조작, 은폐함으로써 기억을 조작한다고 간파한바 있다.⁷⁴⁾ 일본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들은 허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억의 조작을 통해 과거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일반인의 기억에서 제거한 후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역사적 왜곡까지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1989년 1월 히로히토는 89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전후 전쟁범죄의 행위를 사과하지도 않은 채 식물학자로 행세하며 지냈다. 그가 천수를 누리며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을 피해간 배경에는 미국의 대일정책이 있었다. 또한 이를 집행하기 위해 '천황제'를 상징천황제로 바꾸어가며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려 했던 미국 지도층과 맥아더의 역할이 지대했다.

맥아더는 회고록에서 히로히토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⁷⁵⁾

'천황'은 일본인 중 누구보다도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밴 인물이었다. 점령 후의 정치적 성공은 천황의 성실한 협조와 영향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

74) Herbert Hirsh,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p. 182.

75)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p. 288.

히로히토에 대한 맥아더의 평가가 개인적 입장에 대한 소신의 표출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히로히토가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가 '민주'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전범 행위를 부정하며 비굴한 행적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전후 일본사회에서 맥아더 선풍에는 일본 '천황'을 전범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 되었으리라. 또한 이러한 면죄부가 과거 일본의 전쟁 범죄행위를 모두 기억에서 몰아내는 추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적법성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쿄재판에 대해 맥아더는 후에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⁷⁶⁾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재판에 참석한 권위 있는 재판관들조차도 완전한 의견 일치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불완전한 현대 문명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이 군사재판만큼 성실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달리 없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과연 그럴까? 1952년 스가모 감옥에서 열린 칠석날 축제에는 다음과 같은 단가(短歌)가 적혀 있었다.⁷⁷⁾

천황도 이곳으로, 종신형으로
일본인에게 학을 뗐다, 재군비라니!

(원고투고일 : 2012. 9. 30, 심사수정일 : 2012. 11. 22, 게재확정일 : 2012. 11. 30)

주제어 : 맥아더, 극동국제군사재판, 한일관계, 전쟁범죄, 전쟁범죄위원회, 히로히토, 연합국최고사령관, 도조 히데키

76) *Ibid.*, p. 318.

77) 우쓰미 아이코 지음·이호경 옮김, 앞의 책, 254~255쪽.

<ABSTRACT>

MacArthur's Standpoi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ar East and the origins of Refraction of Korea-Japan Relations after World War II

Lee, Sang-ho

Japan's historical oblivion about the War criminal through 1931~1945 has been grand barrier to rebuild Korea-Japan relations after World War II. Especially, the remission of 'emperor' Hirohito of Japan from war crimes was caused by America's occupation policy over Japan which justified Japanese rightists' action and remarks.

Because it affected the Korea-Japan relations after Korea's Liberation in 1945, this IMFTE case was important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This article, investigates IMFTE process through telegram exchanges between MacArthur and Washington over the Tokyo Trial.

On September 11th, 1945, Douglas MacArthur a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ssued an order of arrest of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Imperial Japan Tojo Hideki and 44 persons. Thereafter, on January 19, 1946, public announcement was made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ar East', and the trial started from May 3, 1946.

Instead of being strictly punished, they were relieved as American policy toward the Japan had changed. Finally, only 7 of the defendants of war crime were executed on December 23, 1948 after 2 years of trial.

Disregarding the 20million Asian people's wishes, the military tribunal reserved punishment of the key war criminals of Japan which caused Japan's distortion of its history and Korea-Japan relationship.

Key Words : Douglas MacArthur, IMTFE(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ar East), Korea-Japan Relations, War Criminal, War Criminal Commission, Hirohito, 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Tojo Hideki